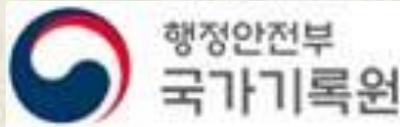


# 공공 영상아카이브와 국가기록원 정책

2017. 12. 1



# 목 차

**I** 국가기록원 영상기록물 기획수집 현황

**II** 국가기록원 영상기록물 종장기 수집전략

**III** 영상아카이브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 현황

**IV** 영상아카이브 환경변화와 정책 개선과제

**V** 맺 음 말

# 1. 국가기록원 영상기록물 기획수집 현황

## ● 영상(영화/방송/기업 영상)기록물 수집 현황

(단위: 점·편)

년도	주요기록물	수량
2008년	EBS 방송기록물, 자유부인, 시집가는 날 등 문화재 등록 한국 고전영화	84
2009년	그때를 아십니까 등 방송 다큐멘터리, 집 없는 천사, 무궁화동산 등 고전영화	151
2010년	구 동아방송·SBS 방송기록물, 청춘의 십자로, 독도와 평화선 등 고전영화	540
2011년	EBS·독립제작사협회·지역민방 방송기록물, 순종황제 인산습의 등 기록영화	749
2012년	SBS·MBC·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기록물, 오발탄, 5인의 해병 등 고전영화	698
2013년	MBC·EBS·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기록물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, 신상옥감독 영화	2,096
2014년	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영상기록물·KBS·MBC·SBS 방송기록물, 신상옥감독 영화	4,444
2015년	MBC 정치소재 방송기록물, 수업료, 낮은 목소리 등 고전영화 및 다큐멘터리	120
2016년	MBC·SBS·동아건설 등 경제소재 방송기록물 및 기업 영상기록물, 다큐멘터리	239
영상기록물 수집량 합계		9,121

## 2. 국가기록원 영상기록물 중장기 수집전략

<b>기록물 수집</b>	<b>'15 한국정치사 영상기록 수집</b> (정치소재 영상, 사회사 독립영화)	<b>'16 한국경제사 영상기록 수집</b> (경제발전 영상, 사회사 독립영화)	<b>'17 한국사회사 영상기록 수집</b> (사건사고 영상, 사회사 독립영화)	<b>'18 한국문화사 영상기록 수집</b>
<b>영상기록물 중장기 수집전략 ('15~'19)</b>				
<b>기록관리 협력</b>	<b>'15 영상기록관리 거버넌스협의회</b> (세계기록유산)	<b>'16 영상기록관리 거버넌스협의회</b> (지침·표준 개선)	<b>'17 영상기록관리 거버넌스협의회</b> (정책 거버넌스)	<b>'18 영상기록관리 거버넌스협의회</b>

### 3. 영상아카이브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 현황 (1)

#### ●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(법 제46조 3,4항)

-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『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제1항 근거, 상영등급 분류받은 영화 중 국가적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 판단해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, 지정하는 영화에 대해 소유·관리자 대상 원판필름/복사본 1벌, 대본 1부 송부 요청 가능
-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(재송신 제외) 프로그램 중 국가적 영구 보존 가치 있는 방송프로그램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,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 가능하며 『방송법』 제2조제3호가목 지상파방송사업자 원본/사본 1부 요청 가능

#### ●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(시행령 제84조 2항)

- 법 제46조 제3항 및 제4항 따라 영화제작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영화필름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월 이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해야 하며, 불가피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 3개월 범위 내 송부시기 연장 가능

### 3. 영상아카이브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 현황 (2)

#### 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의무 (법 제17조 3항)

-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 관련 시청각 기록물 등을 생산하여야 함

#### 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(시행령 제19조 1항)

- 법 제17조제3항 근거, 공공기관 아래 사항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(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·관리원칙, 시행 전·과정·후 주요상황 파악)
  -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(대통령·국무총리 등)
  - 외국 원수·수상 등 주요 외국인사 주요 동정 및 대한민국 관련 사항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
  - 국제기구, 외국과의 조약·협약·협정·의정서·교류 추진 등 주요 활동
  - 『국가재정법』 제38조 대규모사업/시행령 제14조 대규모 개발사업
  - 대규모 토목·건축공사 실시로 본래 모습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
  - 사라지거나 사료적 가치 높은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이나 구조물
  - 공공기관 장이 필요 인정한 다수 국민 관심사항인 주요사건/사고
  - 증명적 가치 높은 현장/형상으로 시청각적 보존 필요 사항
  - 국내 최초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 높은 사항
  -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 생산 필요성 인정되는 사항

### 3. 영상아카이브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 현황 (3)

#### ● 동영상기록물 생산의무 (시행령 제 19조 2항)

■ 공공기관 장은 다음 해당사항에 대해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함  
( 촬영 개요 및 시간 별 촬영 세부사항 포함하는 설명문 도 별도 작성 )

- 제1항제1호 중 **대통령 취임식**
- 제1항제3호 중 『국가장법』에 따른 **장의행사**
- 제1항제3호 중 **국가차원 필요** 인정되는 **특별법 정한 국제·체육행사**
- 제1항제4호 중 **다수 외국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 참석 국제회의**
- 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·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 정한 **대규모 사업**
- **그 밖에** 동영상기록물 생산 필요성 인정되는 사항

### 3. 영상아카이브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 현황 (4)

#### ●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(법 제 23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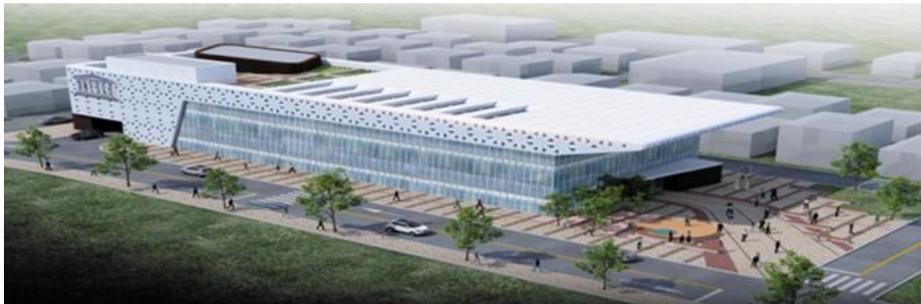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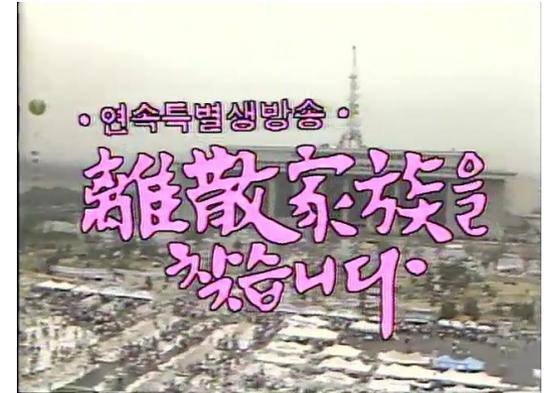
-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영상 또는 음성 형태 기록물을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,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함

#### ● 시청각 기록물의 이관시기 (시행령 제 56조)

- 공공기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
(단,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 적합 서고·장비 갖춘 기관 이관 연장 필요 시,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범위 내 연장 가능)

# 4. 영상아카이브 환경변화와 정책 개선과제

## ● 국제기록유산센터(ICDH) 유치와 영상기록유산



## 4. 영상아카이브 환경변화와 정책 개선과제

### ● **국가기록원 영상기록유산 관리정책 개선과제**

#### **국가기록원 영상기록관리 체계 혁신**

- 영상기록 생애주기 전반의 연속적 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체계 혁신
  - 인적·물적 전문성 보강, 품질기반 관리체계 구축, 공유·개방 기반 마련

#### **『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』 현행화**

- 2006년 10월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영상기록물 관련 조항 현행화
  - 영상기록물 정의, 관리 기준 및 절차 정비,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반영

#### **협력형 공공 영상기록물 관리모델 마련**

- ICT 발전에 따른 영상기록물 유형 다양화 및 양적 증가에의 공동 대응
  - 기록유산기관 연계하는 협력형 헤드쿼터 (Whole of Society 접근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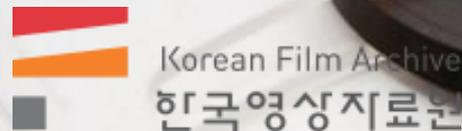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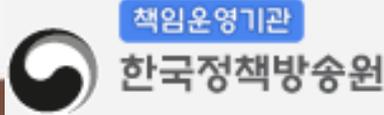
## 5. 맺음말

- 영상기록유산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R&R 정립 필요성

# 2017 World Day for Audiovisual Heritage

“Discover, Remember and Share”

Take part in the worldwide celebrations on 27 October!



**감사합니다**